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법 제86조 내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의용소방대(이하 "의소대"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의소대는 도지사의 명을받아 소방서장 또는 군수(소방서 미관할 구역에 한한다. 이하 같다)가 다음 각호와 같은 구역별로 설치한다.

1. 소방서 관할구역 : 소방서, 읍, 면별
2. 소방서 미관할구역 : 읍, 면별

② 소방서와 읍·면에는 부녀의용소방대(이하 "부녀대"라 한다)를 설치한다.

③ 의소대(부녀대 제외)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관할구역을 따로 정하여 그산하에 지역 의용소방대(이하 "지역대"라 한다)를 설치할수 있다.

제3조(명칭) ① 의소대의 명칭은 소방서 관할구역에 있어서는 ○○소방서 의용소방대, ○○소방서 ○○읍(면) 의용소방대라 하며, 소방서 미관할구역에 있어서는 ○○군 ○○읍(면)의용소방대라 한다.

② 부녀대의 명칭은 제1항중 의용소방대를 부녀의용소방대로 한다.

③ 지역의용소방대의 명칭은 제1항 의용소방대 ○○지역 의용소방대라 한다.

제4조(대의표지) ① 대의 표지는 대의기와 관서표지로 한다.

② 대의기는 대의 사무실에 두며 규격 및 제식은 별지 제1호와 같다.

③ 대의표지와 현판의 규격 및 제식은 별지 제2호와 같다.

제 2 장 조직 및 정원

제5조(임용기준) 의소대는 (부녀대, 지역대를 포함한다) 그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중 의소대에 자원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호사항을 고려하여 임용한다.

1. 관할구역내에서 안정된 직업을 가진 주민
2.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주민
3. 신망이 두터우며 의용봉공정신이 강한 주민

제6조(조직) ① 의소대에는 대장 1명, 부대장 1명, 부장, 반장 및 일반대원과 약간명의 교문을 둔다.

② 부녀대에는 대장 1명, 부대장 1명, 부장, 반장 및 일반대원을 둔다.

③ 지역대에는 대장 1명, 부장, 반장 및 일반대원을 둔다.

제7조(대장등의 임무) ① 대장은 소방서장 또는 군수의 명을 받아 대의 업무를 통괄하고 대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부녀대장은 소방서장 또는 군수의 명을 받아 부녀대의 대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지역대장은 대장의 명을 받아 지역대의 대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8조(업무분장)①의소대 또는 지역대에는 총무부, 방호부 및 지도부를 두고 총무부에는 서무반, 보급반을 방호부에는 소화반, 구조반을 지도부에는 예방반, 훈련반을 두며 부, 반별 업무분장은 별지 제3호와 같다.

②부녀대에는 홍보부와 구호부를 두고 홍보부에는 서무반, 홍보반을, 구호부에는 구급반, 구호반을 두며 부, 반별 업무분장은 별지 제4호와 같다.

③소방서장 또는 군수는 필요한 때에는 부에 반을 두지 않을 수 있다.

④부와 반의 정원은 소방서장 또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대의 정원)소방서와 읍 지역의 경우 의소대별 정원은 60명으로 하고 부녀대의 인원은 50명내외로 하며 지역대를 설치할 경우 지역대별 인원은 20명 내외로 한다. 다만 면 지역은 의소대 30명, 부녀대 20명으로 한다.

제 3 장 임 용

제10조(대원의 임용)①대장, 부대장 및 부녀대장, 부대장과 지역대장은 소방서장 또는 군수의 추천에 의하여 도지사가 임용한다.

② 대원은 대장의 추천에 의하여 소방서장 또는 군수가 임용한다.

③ 회계 및 물품출납담당 대원의 임명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회계관계 공무원 제정보증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대장등의 임기) 대장 및 부녀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다.

제12조(고문의 위촉) 고문은 지역사회의 소방안전과 의소대의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한 주민으로서 대장의 추천에 의하여 소방서장 또는 군수가 위촉한다.

제13조(임용구비서류) ① 의용소방대원의 임용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대원서 1통
2. 이 력 서 1통

② 입대원서 서식은 별지 제5호와 같다.

제14조(해임사유) 대원이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해임하여야 한다.

1. 대원이 소재불명이 된 경우
2. 대원이 구역외로 이주한 경우

다만, 2개이상의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는 시지역에서는 대원으로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4. 대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기타 대원의 자격으로서 소방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

제15조(대원의 신분증명) ① 도지사는 대장의, 소방서장 또는 군수는 대원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의 신분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도지사나 소방서장 또는 군수는 신분증명서를 별지 제7호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 4 장 복무 및 교육훈련

제16조(복무의무) ① 대원은 비상근으로 소집명령에 따라 출동하되 화재발생을 인지 또는 통보받은 때에는 출동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법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대상물을 검사하도록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금지행위) 대원은 각 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기타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기타 대의 명예가 훼손될 행위

제18조(복제) ① 대원의 복제는 별지 제8호와 같다.

② 제1항의 복제는 도예산으로 조제하여 대원에게 지급한다.

제19조(복무감독) 대장과 대원의 복무는 소방서장 또는 군수가 감독한다.

제20조(검열) 소방서장 또는 군수는 대의 운영과 업무수행 사항을 지도하기 위하여 연2회(1월과 7월)이상 검열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교육 및 훈련) 대장은 소방서장 또는 군수의 명을 받아 대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월1회 4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5 장 경비, 보수 및 보상금

제22조(기본경비) 대원의 수당, 대원에 대한 상이사망 보상금, 대의 장비관리비 기타 대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는 도예산에 편성한다.

제23조(출동수당) ① 대원이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교육, 훈련 및 홍보 등 포함)된 대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당은 1인1회에 소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1호봉 봉급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의 70% (단 백원미만은 절사한다)로 한다.

제24조(활동비보조 등) ① 소방서장 또는 군수는 대원이 의소대와 직접 관련

있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 필요경비 (여비 등)를 지원할수 있다.

② 시.군은 관내의소대가 시.군 행정에 필요하고 유익한 지역활동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수 있다.

제25조(재해보상의 종류와 기준) ① 대원이 소방업무로 인하여 질병,부상,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재해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요양보상
2. 장애보상
3. 장제보상
4. 유족보상

제26조(요양보상) ① 대원이 소방작업으로 인하여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진료,치료,수술,약제,입원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치료비는 소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4호봉 봉급년액 80%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수 없다.

제27조(장애보상) ① 대원이 소방작업으로 인하여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후에 신체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신체장애의 등급 및 신체장애의 등급별 장애보상금은 각각 별지

제9호에 기재된 신체장애가 병발하였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등급에 의한다.

제28조(장제보상)대원이 소방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소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4호봉의 봉급액 3월분을 지급한다.

제29조(유족보상)대원이 소방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소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4호봉 봉급액의 3년분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제30조(재해보상청구)① 제25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청구는 별지 제10호 내지 제13호에 의하여 재해를 받은날로부터 3월이내에 대장을 경유 소방서장 또는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소방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에 대한 결정을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6 장 의용소방대연합회 등

제31조(의용소방대연합회) ① 의소대 상호간의 소방업무 정보교환, 대원의 복지향상과 친목도모 등 지역소방 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와 시·군의 행정구역단위로 의소대 연합회를 구성할수 있다.

② 도연합회 구성은 시·군지역 의소대 (부녀대포함)연합회 대표로 구성한다.

③ 시·군연합회의 구성은 관할 행정구역내의 각 대장으로 구성한다.

제32조(연합회의 임무) 연합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소대 친목도모
2. 의소대간의 협력강화
3. 지역행정 (소방 및 일반)협조지원

제33조(연합회 경비지원) ① 도는 도연합회와 시·군연합회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수 있다.

② 시·군연합회가 시·군행정에 필요하고 유익한 지역활동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수 있다.

제34조(관할구역내의 업무지원 등) 소방서장은 시와 군에서 관할 행정구역내의 의소대(부녀대 포함)에 대하여 활동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7 장 보 칩

제 35조 (권한위임) 도지사는 의소대운영상 필요한 권한의 일부를 소방서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할수 있다.

제 36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칩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대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시·군의소대 설치조례 시행당시 임명된 대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3. (대장의 임기에 관한 규정) 이 조례시행전에 임용된 대장의 임기는 계속되며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4. (대원의 신분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대원의 신분증명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새로이 발급할 때까지 유효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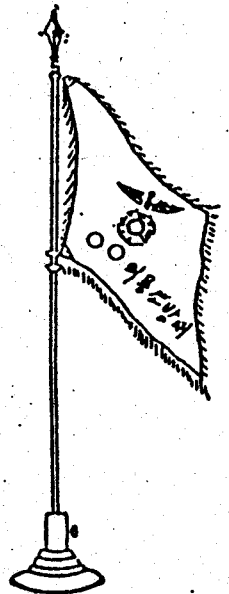
(별지 제1호)

의용소방대기

(1) 도 안



(기)



(기방)

(2) 기

- 규격 : 기 --- 가로 90cm, 세로 64cm
 휘장 --- 가로 45cm, 세로 36cm
 수십 --- 8cm
- 색 : 지 --- 남색
 휘장 --- 황금색
 수십 --- 황금색
 글씨 --- 은백색
- 저집 : 우마넨지
- 글씨 : 기면상부 --- 소속 시(군)명 (자획 8cm 크기)
 기면하부 --- 00 의용소방대 (자획 6cm 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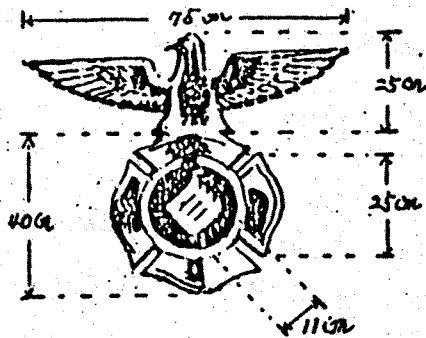
(3) 기 방

- 규격 : 기봉 --- 삼각유봉
 기대 --- 길이 150cm, 직경 2.5cm
- 재료 : 기봉 및 기대 --- 첨강제 은백색도금
 받침대 --- 첨제

(별지 제2호)

의용소방대표지

(1) 도 안



(2) 규격

- 비둘기의 너비 : 75 cm
- 비둘기의 높이 : 25 cm
- 원형모양 도끼날 직경 : 40 cm
- 원형호스 직경 : 25 cm
- 불꽃 길이 : 11 cm
- 표지의 두께 : 10 cm

(3) 지 집 : 목재 및 아크릴

(아크릴의 경우에는 내부에 형광등을 가심하여 야간에 점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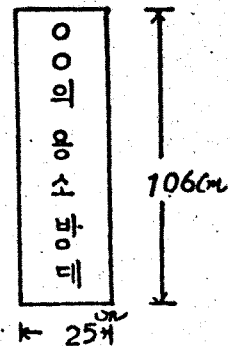
(4) 색 : 황금색

현판

(1) 두께 : 3cm

(2) 지집 : 목재

(3) 색 : 판 - 담황색, 글씨 - 흑색



(별지 제3호)

의용소방대업무분장

부 명	반 명	분 장 사 무
총무부	서무반	1. 대의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 2. 대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3. 대원의 연락 및 소집에 관한 사항 4. 기타 타부반의 업무에 속하지 않은 사항
	보급반	1. 대의 경리 및 조달에 관한 사항 2. 대의 장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방호부	소화반 (군지역 소방반)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에 관한 사항 2. 소방용수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구조반 (군지역 구조반)	1. 주민의 대피 및 구호에 관한 사항
지도부	예방반	1. 대의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2. 주민지도 계몽에 관한 사항
	훈련반	1. 대의 훈련에 관한 사항

(별지 제4호)

부녀대의 업무분장

부 명	반 명	본 장 사 무
홍보부	서무반	1. 대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대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3. 대원의 연결 및 소집,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홍보반	1. 관할구역내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2. 불조심 및 의소대 운영에 따른 홍보활동 3. 소방업무에 관한 주민지도 및 계몽에 관한 사항
구호부	구급반	1. 화재현장 부상자 치리에 대한 지원활동 2. 응급조치
	구호반	1. 이재민 위안활동 2. 이재민 가묘조치

(별지 제 5호)

입 대 원 서

주소

성명

(성별) 남 . 여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위 본인은

소방서
군

읍·면

의용소방대원으로 복무

하고자 입대를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성 명

인

추천인	직	성명	인
-----	---	----	---

귀하

(별지 제6호)

신 분 증 명 서

구 분	내 용	도 형
지 질	신분증의 용지는 백색으로 하고, 지질은 인쇄용지 190g /㎡으로 한다	
계 식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분증의 크기는 가로 5cm X 세로 7.5cm로 한다 2. 후면 사진첨부란 및 전면에 1.5mm의 얇은 연두색 문자로 "대한민국 의용소방·"을 , 중앙부분에 금색으로 의용소방대 "모표"를 인쇄한다 3. 후면 사진첨부란 밑의 모서리에 녹색으로 "의용소방 "을 인쇄한다 (글씨크기 가로 0.8cm X 세로 1cm X 굵기 1mm) 4. 신분증과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촬영한 것으로서 크기는 가로 5cm X 세로 3.5cm로 한다 5. 신분증은 피.브이 .씨 또는 비닐지로 완전 밀착포장 하여 발급한다. 	별 도
관 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분증의 분실, 오손 및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재발급반야 한다 2. 의용소방대원을 퇴직하였을 때에는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별지 제 6호 별도)

(전 면)

(후 면)

- ① 발급기관의 장 및 직인
- ② 계 인
- ③ 사 진 (5cm X 3.5cm)
- ④ 신분증번호
- ⑤ 소 속 (00의용소방대)
- ⑥ 성 명
- ⑦ 발급기관명 (도 . 소방서 . 군단위)
- ⑧ 철 인

* 4.5.6.7은 흑색 모필로 기재

(별지 제 7호)

의용소방대원 신분증 발급대장

계			발행번호	사진	발행일자	직위	성명	생년 월일	주민등록 번호	주소	수령인 (인장)
구	분	회수일자									

복 제 (표 지 장)

구 분		부 장 이 상	반 장 이 하	도 형
계	지 질	금색 금속지로 한다	반장은 부장이상의 것과 같이한다	(가) 반장이상의 것은 소방공무원 간부의 것과 같이한다 (나) 대원의 것 별도 1 가. 계급장
	제 식	1. 대장의 것 ○ 소방정의 계급과 같이한다. 2. 부대장 , 지역대장의 것 ○ 소방령의 계급장과 같이한다 3. 부장의 것 ○ 소방경의 계급장과 같이한다	1. 반장의 것 ○ 소방위의 계급장과 같이한다 2. 대원의 것 관찰에서 방수하는 모양으로 관찰은 가로 5밀리미터, 세로 5밀리미터이고 방수모양은 마름모형으로 높이 15밀리미터, 폭 12밀리미터로 전체높이 20밀리미터 크기로 제작한다	
급	장			
장	약	지 질	정장과 같다. 다만 작업복용은 작업복지질에 금색사로 자수한다	부장이상의 것과 같이한다

구 분		부 장 이 상	반 장 이 하	도 형
약	제 식	정장과 같이 하되, 크 키는 정장의 2분의 1로 한다.	부장이상의 것과 같이 한다	
금 장	지 질	금색 금속지로 한다	부장이상의 것과 같이 한다.	별도 1 나. 금장
	제 식	세로 12밀리미터, 가로 25밀리미터 크기 단형 으로서 우편에 구.시. 음.면명 좌편에 "의소"의 문자를 횡서로양각한다	부장이상의 것과 같이 한다.	
가 습 표 장	지 질	녹색지질에 금색사로 자수한다	부장이상의 것과 같다	별도 1 다. 가습표장
	제 식	의용소방 틀 상징하는 "불"위에 평화틀 상징 하는 "비둘기"틀 그린 도형으로 전체 크기는 가로 65밀리미터, 세로 45밀리미터이며 "불"의 가로 12밀리미터, 세로 15밀리미터이고 "비둘기"는 가로	부장이상의 것과 같다	

구 분		부 장 이 상	반 장 이 하	도 형
		47밀리미터, 세로 15 밀리미터로 제작하여 왼쪽주머니 상단에 부착한다		
지 휘 장	지 질	금색 금속지로 한다.		별도 1 라. 지휘장
	제 식	십자형 모형으로 가로 52밀리미터, 세로 53 밀리미터의 크기로 "소방호스"를 표시하는 직경 30밀리미터 원 안 의 중심에 가로, 세로 10밀리미터의 "불"을 표시하고 "불"밑에 크기 20밀리미터의 지 휘봉을 교차시키며 중심원 상단 십자형에 가로 20밀리미터, 세로 10밀리미터 크기의 "무궁화 꽃"을 표시하 여 제작하며, 의용소방 대장만 정복 오른쪽 주머니부분에 부착한다		

구 분		부 장 이 상	반 장 이 하	도 형
뱃지	지 진	급색 급속지로 한다.	부장이상의 것과 같다.	별도 1 마. 뱃지
	제 식	전체 크기는 가로 17 밀리미터, 세로 18밀리 미터 크기로, 가로 17 밀리미터, 세로 6밀리 미터 크기의 "비둘기" 를 표시하고 그 밑에 가로 17밀리미터, 세로 10밀리미터 크기의 반 원형으로 "월계수일"을 표시하고, 반원형안에 가로 세로 5밀리미터의 "불"을 표시하여 제작 한다	부장이상의 것과 같다.	

(소 방 모)

구 분		부 장 이 상	반 장 이 하	도 형
소 방 모	정	1. 카 바 등모는 흑갈색 모구, 레빠지, 하모는 쥐색 포라지 2. 전비와 턱끈은 흑색 비니루지 3. 자바라는 흑색 견직 지	부장이상의 것과 같다.	법도 2 소방모 가. 정모
	모 식	1. 모자의 천정은 타원 형으로 하고 둘레에는 철사를 넣어 팽팽하게 한다. 2. 모자태의 주위의면 에는 넓이 4센치미터 의 자바라를 두르고 내면에는 비니루 땀 받이를 붙인다. 3. 모자태의 전반부에 는 금색 금속사로 편 넓이 1.2센치미터의 따토 만든 턱끈식 금선을 후반부에	부장이상의 것과 같다. 모자태의 전반부에 턱 끈만 두른다.	

구 분			부 장 이 상	반 장 이 하	도 형
방	소 정	재	<p>는 넓이 1.5센티미터의 턱끈을 두루고 양 끝에 귀 단추를 단다.</p> <p>4. 차양은 반월형으로 하되, 부장이상의것은 표면에 다음 구분에 따라 금색 금속사로 자수된 특색라사지를 입힌다.</p>		
	모	모 식	<p>가. 대장의 것</p> <p>중양에 햇불 1 개 그 좌우에 물방울 모양 각 4 개와 월계수모양의 불꽃 각 10개를 자수한다</p> <p>나. 부대장·지역대장 의 것</p> <p>중양에 햇불 1 개 그 좌우에 물방울 모양 각 4 개와 월계수모양의 불꽃 각 6 개를 자수한다</p>		

구 분		부 장 이 상	반 장 이 하	도 형
소		<p>다. 부장의 것 중양에 햇불 1개와 그 좌우에 월계수 모양의 불꽃 각 5 개를 자수한다</p>		
	작업모	<p>지 질 국방색 나이론 직지</p> <p>제 식 도형의 운동모 모양으로 한다.</p>	부장이상의 것과 같이 한다.	나. 작업모
모	방수모	<p>지 질 흑색 또는 다색포합성 화이바지</p> <p>제 식 헬멧형으로 외면과 내면을 포지합성화이바지로 한다.</p>	부장이상의 것과 같이 한다.	다. 방수모
	모장	<p>지 질 바탕은 흑색라사지이며 금색사로 자수한다.</p> <p>제 식 가로 75밀리미터, 세로 25밀리미터의 "비둘기"를 표시하고 그 하단 중심에 직경 40밀리미터의 원형모양</p>	<p>부장이상의 것과 같다.</p> <p>부장이상의 것과 같다.</p>	라. 모 장

구 분		부 장 이 상	반 장 이 하	도 형
모	정 제	의 "도키날" 4 개를 표시하되 "도키날" 사이는 3밀리미터의 간격을 유지하고 원형 도키날 중심에 직경 25밀리미터 원형 굽기 2밀리미터의 소방호스용 상징토목 표시하며 그 원 중심에 가로, 세로 11밀리미터의 "불"을 표시하고 "불" 주위의 사방으로 "불"이 방수하는 모양으로 표시하여 제작한다.		
	장 식	정장과 같이 한다.	부장이상의 것과 같다.	
장	지 질	모양은 정장과 동일하나 3분의 2 크기로 제작하여 작업모에 부착한다.	부장이상의 것과 같다.	
	약 장			

(복 계)

구 분			부 장 이 상	반 장 이 하	도 형
제 정 상	의	지	동복은 흑감색 구레빠 또는 라사지, 하복은 취색 모포라또는라사지	부장이상의 것과 같이 한다.	별도 3 제 복 가. 동정복 상의 (1) 부장이상 (2) 반장이상 나. 하정복상의 (1) 전 면 (2) 배 면
		질	1. 벌림깃에 전면 중앙 에 한줄 4개의 단추를 단다. 2. 동복은 중앙경합선 하단을 절개 한다. 3. 흉부와 복부 각 좌. 우에 동복은 속불입 하복은 겹불입의 뚜껑 주머니를 붙이고 주머 니 단추를 단다. 4. 어깨에 견장지름 붙이고 견장 단추를 단다. 5. 하복은 뒤 허리 부 분에 넓이 5센치미터 의 띠를 붙인다.	부장이상의 것과 같이 한다. ※ 다만 동복은 꺾음깃 으로 하고 한줄 5개의 단추를 단다.	
복	복	식			

구 분			부 장 이 상	반 장 이 하	도 형
재	정 하	지 진	상의와 같이한다.	부장이상의 것과 같이 한다.	
		재 의 식	1. 긴 바지로 한다. 2. 전면 우측에 옆으로 속붙임 작은 주머니와 좌.우측면에 각각 길 이로 속붙임주머니를 1개씩을 붙인다. 3. 후면 좌.우에 각각 옆으로 속붙임 뚜껑 주머니를 붙이고 주머 니 단추를 단다.	부장이상의 것과 같이 이한다.	
복	작 업 복 의 식	지 진	국방색 목면직지	부장이상의 것과 같이 한다	다. 작 업 복 (1) 상 의
		재 의 식	1. 노타이식 깃에 가슴 받이물 붙이고 후면 중앙에 한줄 5 개의 단추를 단다.		

구 분		부 장 이 상	반 장 이 하	도 형	
제 작 업 복 수 복	상 제 의 식	2. 긴 소매로 하고 용 부 좌.우에 걸붙임 뚜 경 주머니를 붙이고 주머니 단추를 단다.			
	하 제 의 식	지 질	상 의와 같음.	부장이상의 것과 같이 한다.	(2) 하 의
		지 질	정복의 하의와 같이 한다. 좌.우와 후면 좌 우에 걸붙임 주머니를 붙인다.	부장이상의 것과 같이 한다.	전 면 후 면
	방 수 복 식	지 질	국방색 고무포지	부장이상의 것과 같이 한다.	다. 방수복
제 식		1. 길이는 뒷굽으로부터 터 약 2.5 센치미터 격하도록 한다. 2. 소매길이는 손목관 절로 부터 3센치미터 길게한다. 3. 굽넨지 꺾음깃에 용 부 및 배부에 방수 고무지를 덧붙이고	부장이상의 것과 같이 한다.	(1) 전 면 (2) 후 면	

구 분				부 장 이 상	반 장 이 하	도 형
재	작	방	제	전면 좌.우에 걸붙임 뚜껑주머니를 붙인다.		
	업	수		4. 소매끝내부에 약 10 센치미터 모직소매 줄 림을 살인다.		
복	복	복	식	5. 전면에 고무단추 5 개를 한줄로 단다.		

비 고

1. 정복상의의 전면, 중앙단추의 배열간격은 최하단 단추가 허리띠 박글 하부에
 위치하도록 간격을 조정 배열한다.

2. 단추는 다음표에 의한 단추를 사용한다.

구 분 복 별	소 방 단 추			빨 단 추		비 고
	대	중	소	중	소	
정 복		○				
작 업 복					○	
주 버 니 단 추 (정 복)			○			상 의
견 장 단 추			○			
모 자 단 추			○			
상 의 단 추					○	

(소 방 화)

구 분		부 장 이 상	반 장 이 하	도 형
소 방 화	단 지 ·길	옥색 복수지(피혁)	부장이상의 것과 같이 한다.	별도 4 가. 단 화 나. 방 수 화
	화 재 식	무장식 단화로 한다.	부장이상의 것과 같이 한다.	
	방 지 길	천연 및 합성고무 범포지, 메리야스 및 철판	부장이상의 것과 같이 한다.	
	수 제 식	1. 길이는 약 8.5 센치 미터로 대퇴부까지 올라오게 하고 2. 바닥속은 철판을 넣으며 3. 상부로 부더 약 50 센치미터는 메리야스지에 고무틀 입힌 고무판을 안으로 붙인다. 4. 상단 외측에 요대에 연결할 수 있는 적당한 길이의 고리끈을 단다.	부장이상의 것과 같이 한다.	
기동 화	지 길 재 식	남자 소방공무원 기동화와 같이 한다.	부장이상의 것과 같이 한다.	다. 기동화

(부 속 물)

구 분		부 장 이 상	반 장 이 상	도 형
부 속	넥 타 이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복용은 옥색, 하복용은 취색 모직지 ○ 넥타이핀은 니켈 도금한 금속지 	해당없음	별도 5 (1) 넥타이핀
	제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봉용 넥타이와 같다. ○ 넥타이핀은 각변이 12밀리미터 대각선이 15밀리미터의 형태로 넥타이핀 형식으로 제작한다. 	해당없음	
물 추	단 지 질	○ 니켈 금속지	부장이상과 동일	(2) 단 추
	제 식	1. 직경 22 밀리미터 (소형 16 밀리미터) 높이 4밀리미터 (소형 3밀리미터) 반구형으로 가장자리높이를 1밀리미터의 토프형으로 하고 그안에 직경 12	부장이상의 것과 동일	

구 분		부 장 이 상	반 장 이 상	도 형
부 속	단 제	<p>미리미터(소형 8미리 미터)로 "햇불"을 양각한다.</p> <p>2. 저면의 중앙에 직경 2.5미리미터(소형 2 미리미터)의 고리플 단다.</p>		
	추 식			
속	지 질	<p>1. 박클은 니켈 금속지</p> <p>2. 띠는 동복은 흑색 하복은 취색 목면지</p>	부장이상과 동일	(3) 허리띠 (박클)
	리 제 식	<p>1. 박 클 세로 37미리미터 가로 53미리미터 니켈 박클로 중앙에 한면이 12미리미터, 대각선이 15미리미터 의 "햇불"을 양각한 다.</p> <p>2. 벨 트 너비 32미리미터, 두 께 4미리미터, 적당한 길이를 하고 끝에 15 미리미터 철판을안밖 으로 붙인다.</p>	부장이상과 동일	
물 띠				

부 제 (부 녀 대 원)

구 분			부 장 급 이 상	반 장 이 하	도 형	
표 지 장	계 급 장	정 장 · 약 장	지 질 · 제 식	남자의용소방대원의 계급장과 같이 한다.	남자의용소방대원의 계급장과 같다.	남자의용소방대 표지장과 같다.
	가 습 표 장		지 질 · 제 식	남자 의용소방대원과 같이한다.	부장이상과 같이 한다.	"
	지 휘 장		지 질 · 제 식	남자 의공소방대원과 같이한다.		"
	뺨 지		지 질 · 제 식	남자 의용소방대원과 같이한다.	부장이상과 같이 한다.	"
소 방 모	작 업 모		지 질 · 제 식	국방색 견직지 또는 화학섬유 혼방지 원형의 운동모 모양 으로 한다.	부장이상과 같다.	
모 장	약 장		지 질 · 제 식	의용소방대원 약장과 같이 한다.	"	
제 복	작 업 복		지 질 · 제 식	여자소방관 제복과 같이 한다.	"	
소 방 화	기 동 화		지 질 · 제 식	여자소방관 기동화와 같이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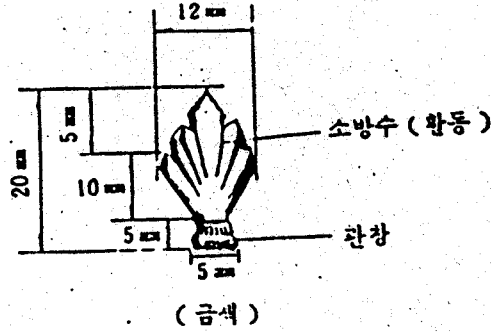
(별 도)

표 지 장

가. 계급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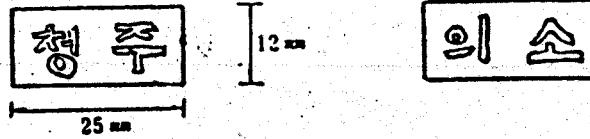
0 반장이상의 것은 소방공무원 간부의 것과 같이 한다

0 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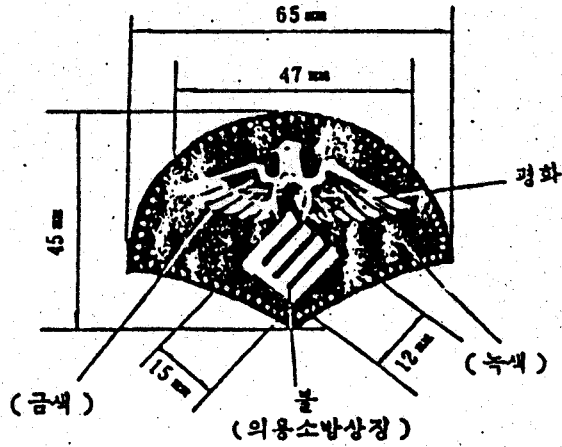


나. 금장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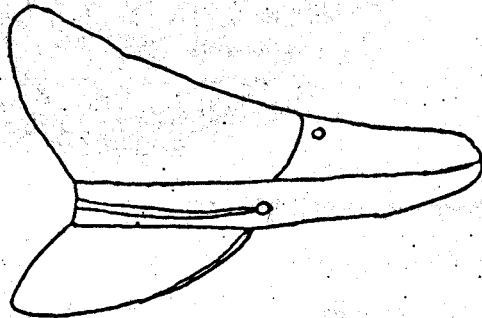
다. 가슴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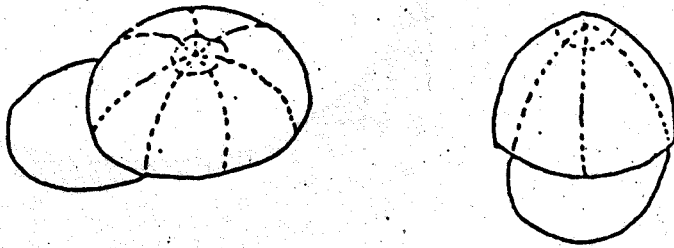
(범도 2)

소 방 모

가. 정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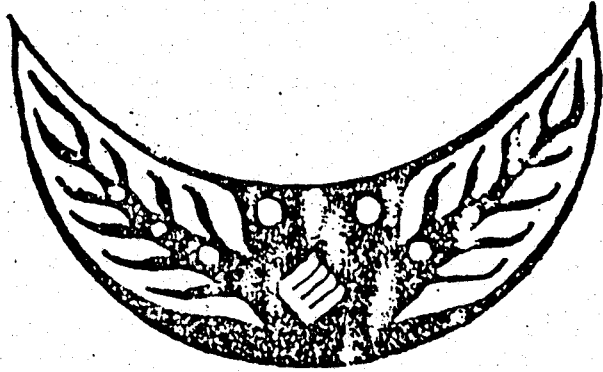
나. 작업모



가. 정 모

(1) 차 양

(가) 대장의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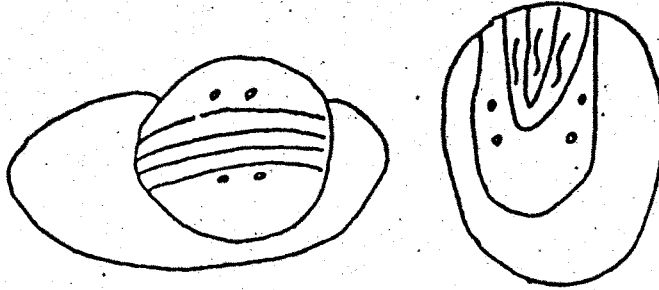
(나) 부대장 및 지역대장의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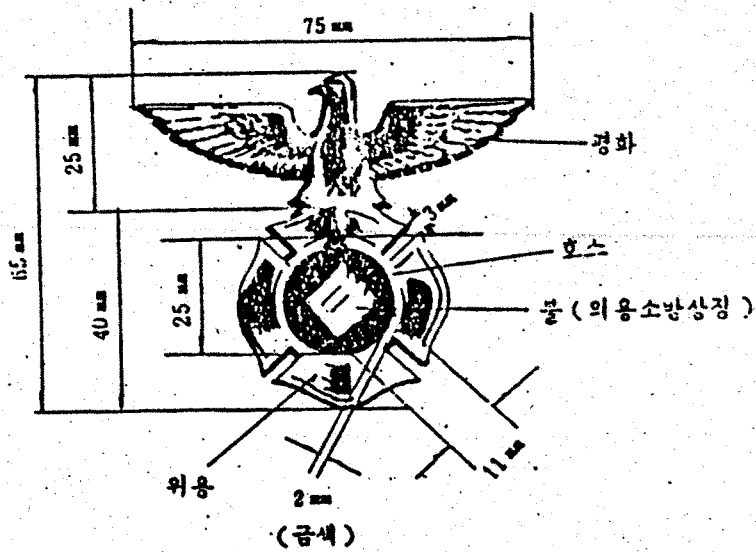
(다) 부장의 것



다. 방수모



라. 모 장



* 의용소방대 모장에 대한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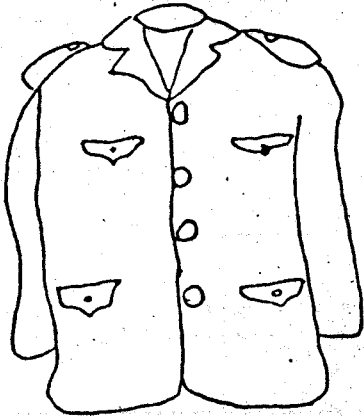
- 비둘기 : 평화의 상징
- 도끼날 4각형태 : 의용소방대 의 위용과 경계대비태세
- 원형호스 : 소방, 단결
- 불 : 의용소방대 상징

(별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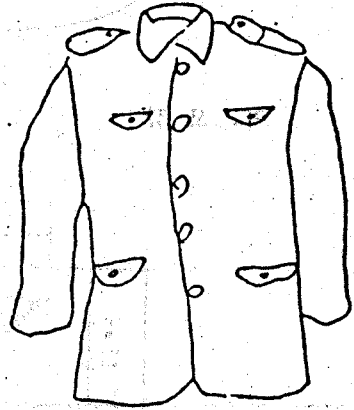
제 복

가. 동정복

(1) 부장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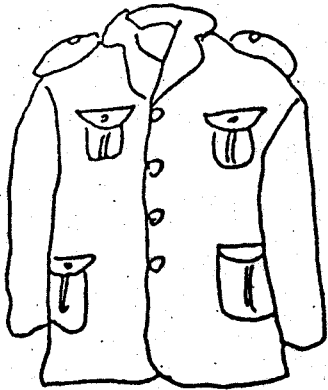


(2) 반장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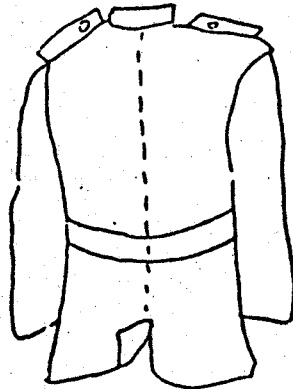


나. 하정복

(1) 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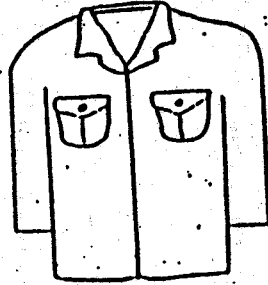


(2) 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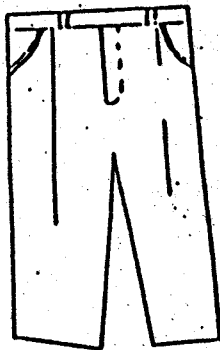
다. 작업복

(1) 상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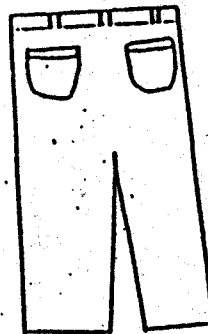


(2) 하 의

가. 치 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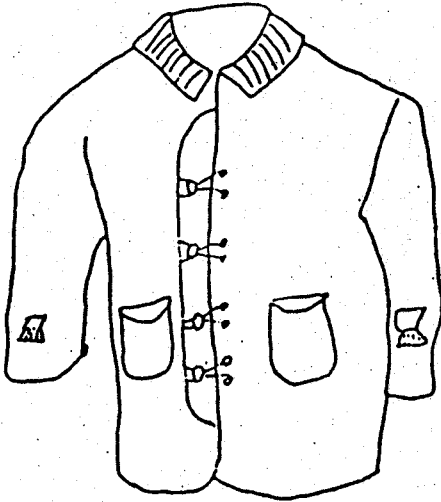


나. 후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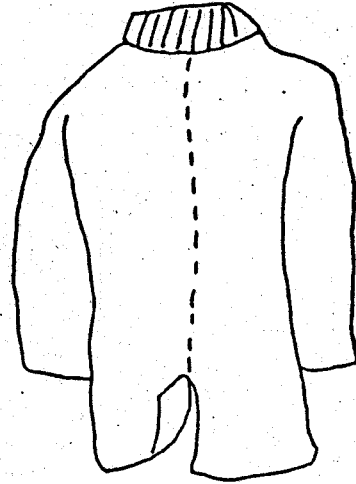


라. 방수복

(1) 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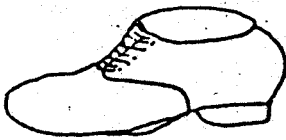
(2) 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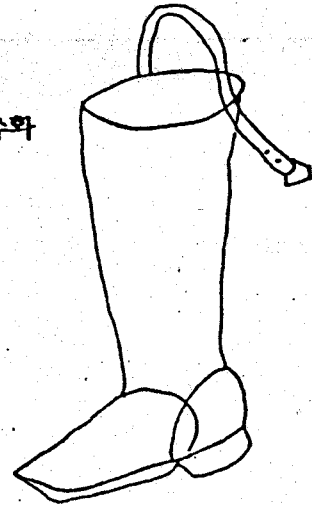
(별도 4)

소 방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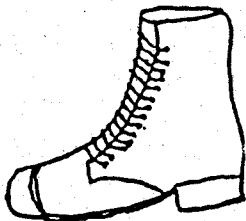
가. 단화



나. 방수화



다. 기동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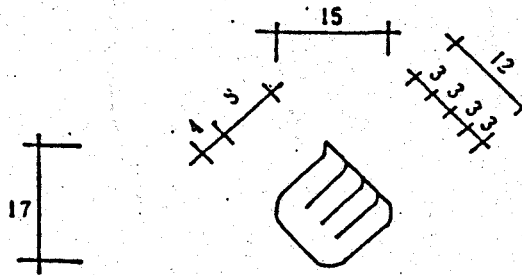
다. 부너대원 기동화



(별도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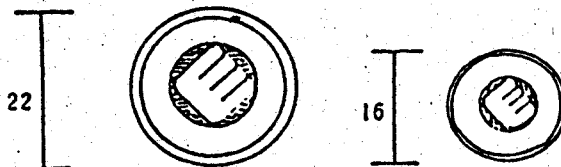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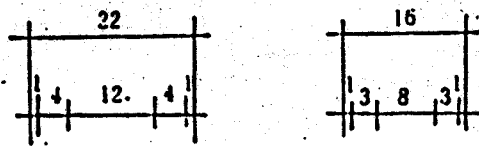
부 속 물

(1) 넥타이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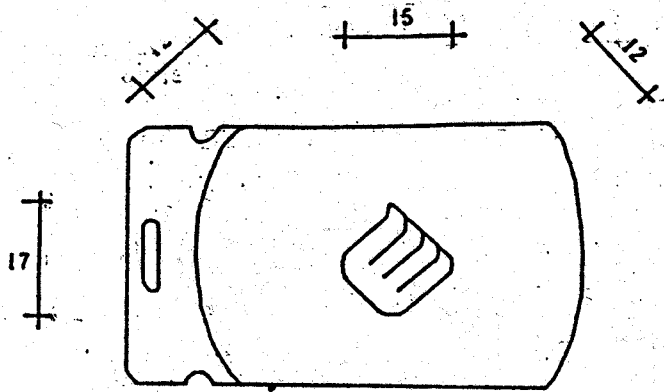


* 넥타이핀 형식으로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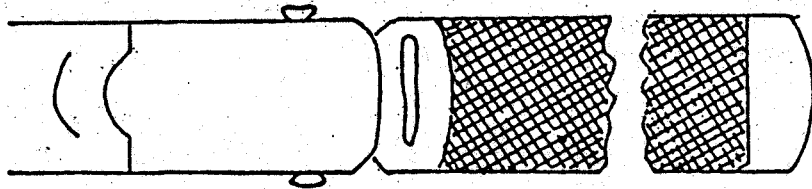
(2) 단 추



(3) 어미티 (박물)



*기존의 형식과 동일형식으로 하나 중앙의 불꽃은 양각한다



신체장애등급표

등급	신체장애
1	1. 양안이 실명된 자 2. 양상지의 완관절 이상이 함께 절단된 자 3. 양하지의 족관절 이상이 함께 절단된 자 4. 저작 또는 언어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자 5. 편상지중 완관절이상과 편하지의 족관절이상이 함께 절단된 자 6. 흉복부 또는 장기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받아 종신토록 취업능력을 잃은 자
2	1. 편안이 실명된자 또는 양안이 조정시력 0.1이하토된 자 2. 편상지중 완관절이상이 절단된 자 3. 편하지중 족관절이상이 절단된 자 4. 생식기의 결손으로 인하여 생식기능을 잃은 자 5. 흉복부 또는 장기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받는 것이 현저한 자 6. 정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받는것이 현저한 자
3	1. 저작 또는 언어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받는것이 현저한 자 2. 외기도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받는것이 현저한 자 또는 안모에 심한 추형을 입은 자 3. 고막의 결손으로 인하여 청력이 완전히 상실된 자 4. 척추에 심한 기형을 일으켰거나 척추의 손상으로 인하여 운동의 장애를 받는것이 현저한 자 5. 양모지 혹은 수지중 5지이상을 잃은 자 6. 편상지 또는 편하지의 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잃은 자
4	전각등급 이외의 신체장애자

신체장애등급별 장애보상표

등급	보상액
제1급	지방소방사 5호봉 봉급년액 80%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제2급	" 75%의 "
제3급	" 70%의 "
제4급	" 65%의 "

(별지 제 10호)

요양보상청구서

1. 소속 (주소)			
2. 성명	성별	생년월일	년 월 일
3. 상병명		상병의 부위와 정도	
4. 상병의 경과			
5. 요양의 내용			
6. 소요 요양비 내용		합계	원
위의 사실과 상위 없음을 증명함			
소재지			
병원 또는 진료소 명칭			
직		성명	
1. 부상 또는 발병 년월일			
		년	월 일
2. 상병명			
위의 사실과 상위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 장		인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인
소방서장 . 군수 귀하			

(법지 제 11호)

장 애 보 상 청 구 서

1. 소속 (주소)				
2. 성명	성별	생년월일	년	월 일
3. 상병명				
4. 부상 또는 발병년월일		년	월	일
5. 장애의 정도				
위의 사실과 상위없음을 증명함 소재지 병원 또는 진료소 명칭 직 및 성명				
1. 장애발생 년월일				
2. 장애명				
3. 청구금액 및 장애등급				
위의 사실과 상위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인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인				
소방서장 . 군수 귀하				

(별지 제13호)

유족보상청구서

1. 소속 (주소)			
2. 성명	성별	생년월일	
3. 부상 또는 발병년월일			
4. 사망년월일			
5. 사망장소			
6. 사망경위			
7. 유족보상금 청구금액			
위와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사망자와의 관계			
성명			인
위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대장		인
소방서장 . 군수 귀하			

1. 사망진단서, 유족의 호적등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2. 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내연관계증명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